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6. 4 선고 2019가합10453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솔

담당변호사 손은별, 최용석, 최기상

피 고 B(개명전 : C)

변 론 종 결 2021. 4. 2.

판 결 선 고 2021. 6.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20.부터 2009. 9.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9779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9. 3.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20.부터 2009. 9.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9. 8. 26.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후 ‘기존 판결 외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기각하여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기재된 형식적인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20.부터 2009. 9.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영호, 판사 박형민, 판사 문 혁